

# 『사이버 감사실』 운영계획

## 1. 『사이버 감사실』 개요

### 도입경위

-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쟁전략으로서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은 기업의 시대적 요청사항임
- 협회의 정부위탁업무 에서 수반되는 크고 작은 비리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비리 예방시스템이 요구됨  
※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업무관련 비리근절대책수립 요청(건설경제과-1417,13.3.5)

### 목 적

- 부패·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대외 신뢰 제고
- 협회 임직원의 부패·비리 사항에 대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자의 제보·신고시스템 구축
-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불공정 업무처리 및 부조리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감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
- 비리제보 상시시스템 구축으로 협회 임직원의 엄정한 직무 윤리 확립 및 비리예방
- 건설업계 윤리경영 선도

### 기대효과

- 온라인 제보시스템 구축으로 대내외 윤리경영 이미지 고양
- 내부 임직원의 부조리·반부패 감사활동 강화
-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렴·공정성 확보

### 근거규정

- 감사규정 제3조 제2호

## 2. 『사이버감사실』 운영 세부 내용

### □ 제보받기

#### (1) 신고자

- 협회 업무처리에 관하여 비리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(제보)하고자 하는 자
  - 외부 이해관계자(회원사, 기타 민원인)
  - 협회 임직원(내부제보) ※ 본회, 건설경제, 시도회 포함

#### (2) 피신고자 : 협회 임직원 ※ 본회, 건설경제, 시도회 포함

#### (3) 적용시점 : 사이버감사실 신설이후 (2013.7.1) 행위부터

#### (4) 신고대상 내용

- 협회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비리·비위 행위
- 비리·비위 행위는 아니더라도 불공정·불합리한 업무처리
- 과도한 임직원의 직무윤리 위반사항(내부제보)
- 기타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조직내부의 위계 및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등(내부제보)  
※ 세부 신고유형 : 5페이지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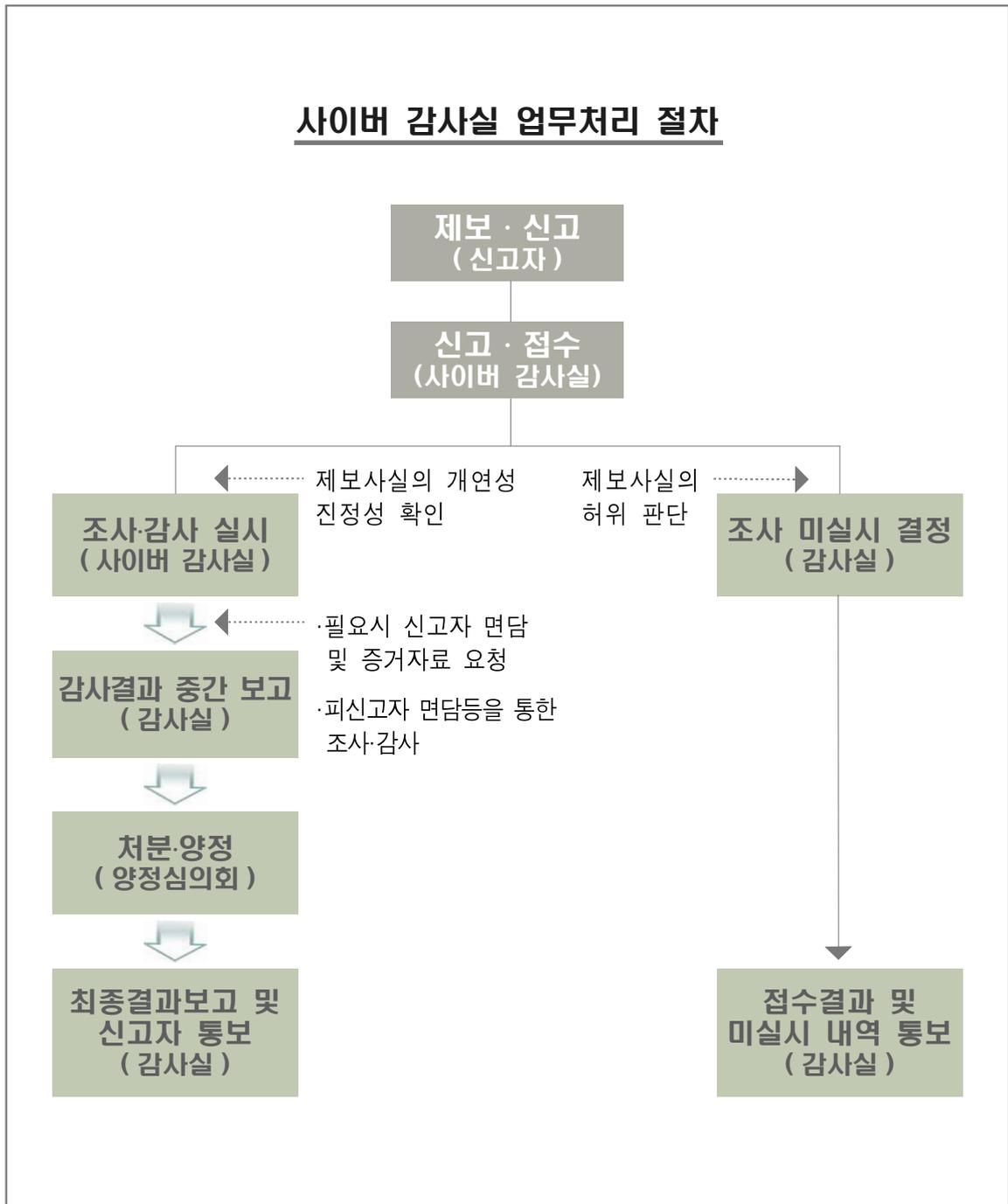
#### (5) 신고방법

- 무책임한 악의적인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·외부 민원 모두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여부를 감사실에서 결정  
※ 협회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의 연락처 반드시 명기
- 비리·불공정 업무처리 신고내용을 구체적 작성하여 신고  
※ 6하 원칙에 의거 신고대상자 및 관련업무 반드시 명시
-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와 협회 내부제보를 이원화하여 신고접수

## □ 제보 사건의 처리

### (1) 주관부서

- 상임감사 통제하에 감사실에서 전담
  - 정기감사와 별도로 특별감사 실시에 준하여 조사



## (2) 제보사항의 확인 및 접수

- 매일 1회 이상 제보사항 접수 여부 확인(감사실)
-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분류

### 신고유형 현황

외부 이해관계자 신고	협회 임직원 내부고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와 관련하여 항응·접대 및 금품수수(요구사실 포함)</li> <li>- 과도하게 불친절한 민원응대</li> <li>-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</li> <li>- 기타 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금 횡령 및 유용</li> <li>- 외부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항응·접대 및 금품수수(요구사실 포함)</li> <li>- 내부 기밀사항의 외부 유출행위</li> <li>- 성희롱 등 풍기문란 행위</li> <li>- 임직원의 이중취업 사례</li> </ul>

- 신고 접수 후 신고자의 신원파악 및 경위 확인
- 신고자의 연락처가 허위이거나 감사실에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익명신고로 간주, 조사하지 않음
- 허위·음해성 제보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로 판단될 경우 조사하지 않음
  - ※ 신고자의 악의·고의신고에 의해 피신고자가 명예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신고자에 의한 무고죄 고발 가능성 공지
- 접수된 신고·제보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관련 사항의 증거 및 증명자료 제공여부의 조회
-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족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처리

### (3) 제보사항의 사실관계 조사 실시

- 사실관계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실시
- 협회 관련자 조사
  - 서면질의(질문서 발송·접수) 또는 면담 조사
  - 문답서, 경위서 등 작성
- 조사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대 7일 이내로 함.  
필요시 10일이내에서 연장 가능(연장시 제보자의 동의를 구함)

### (4) 특별감사 실시

- 사실관계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세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실시여부 결정
- 감사반 편성 및 감사범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
- 관련자 및 관련 부서장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여부 통보 및 자료 요구

### (5) 관련 규정에 의거 양정심사 후 처분

- 특별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후 감사규정에 따라 양정심의회 구성
- 사이버감사 제보접수 및 감사 결과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시 감사실장이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음

### (6) 제보자의 신분보호 조치 강구

-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신분보호 조치 방안 강구(공익신고자보호법 준용)
- 특히 내부제보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신분보장이 요구됨